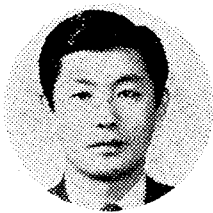


노르딕-國의 商標制度(Ⅱ) —노르웨이 篇—



白 文 久
<辨 理 士>

① 制度의 概要

노르웨이의 現行商標法은 1910年에서 1953年에 걸쳐 施行해 오던 舊法을 廢止하고 1961年에 改正한 것으로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이른바 스칸디나비아 諸國은 1959年에서 1961年 사이에 各各 舊法을 廢止하고 新法을 施行함에 있어 商標權의 發生要件, 서어비스마크 및 立體商標의 保護 등 3國에 共通規定이 新法에 多數反映시키고 있다.

이것은 商標保護에 관한 스칸디나비아 諸國의 統一의 見解라고 할 事項들이 그런대로 新法에 挿入된 것이다.

이 밖에 노르웨이 商標制度에 관한 特徵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商標權은 登錄에 의하여 發生하게 되며 使用함으로써 國內의 去來市場에서 널리 認識하게 된 商標에 관해서도 登錄하지 않고도 商標權을 認定받게 된다.

또한 2人 以上の 者가 同一한 商標에 관해 獨占權을 主張할때는 原則의 上에서 發生한 權利를 갖고 있는 者가 優先權을 갖는다.

그러나 一定한 要件을 充足했을 때는 商標에 관해서

先發生한 權利와 後發生한 權利는 併存할 수가 있다.

(2) 立體商標 및 서어비스마크의 保護에 관해서 規定하고 있다.

(3) 商標의 普通名稱化를 防止하기 위하여 商標權者로부터 要求가 있을 때에는 辭典, 教科書, 其他의 專門書籍에 登錄商標라는 要旨를 明示하지 않은限 商標의 複製를 掲載하는 것을 禁止시키고 있다.

(4) 노르웨이 國內에서 開催된 國際博覽會의 出品物에 사용된 商標는 博覽會에 展示한 날로부터 6個月以內에 出願하게 되면 中間에 他人의 使用 또는 출원에 不拘하고 保護될 수 있다.

이 保護는 相互主義에 立脚하여 外國에서 開催된 國際博覽會에서의 商標展示에도 適用되고 있다.

(5) 審査, 出願, 出願公告 및 異議申請制度를 採用하고 있다.

(6) 登錄은 出願日 또는 出願이 있었던 것으로 看做한 날로부터 有效하다.

(7) 商標權者가 所定の 料金を 添加하여 申請하게 되면 商標의 全體的印象에 影響이 미치지 않는 輕微한 變更은 認定하게 된다.

(8) 登錄商標가 顯著性을 喪失했을 때나 其他의 一定한 事由에 該當되었을때 法院의 判決로서 無効가 된다.

(9) 商標權은 營業과 함께 또는 이것과 分離하여 讓渡할 수가 있다. 그리고 營業을 讓渡했을 때는 그 營業에 관계되는 商標權은 原則의 上으로 營業의 讓受人에게 歸屬된다.

(10) 登錄商標의 使用許諾은 認定하지 않는다.

(11) 노르웨이 國內에서 事業을 하고있지 않는 者는 原則의 上으로 本國의 登錄證明書를 提出할 필요가 있다.

(12) 外國登錄商標에 관해서는 그대로의 態樣으로 노르웨이에서 등록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相互主義에 의해 國王은 命令으로서 그 登錄을 許可할 수가 있다.

② 制度의 運營 및 節次

가. 登錄을 받을 수 없는 商標

노르웨이에서 登錄을 받을 수 없는 商標는 다음과 같다.

(1) 法律이나 公共秩序에 反하거나 嫌惡의 情을 이 르킬 憂慮가 있는 商標

(2) 公衆을 欺瞞할 憂慮가 있는 商標

(3) 紋章, 旗, 公共의 記章이나 記號

(4) 他人의 商號, 姓名 또는 肖像으로 看做할 憂慮가 있는 商標

(5) 保護를 받고 있는 他人의 文學的 및 美術的 著作物의 顯著한 名稱으로 看做할 憂慮가 있는 商標

(6) 他人의 姓名이나 商號, 先出願에 의하여 他人이 登錄을 받은 商標 또는 登錄出願이 되었을때 他人이 널리 使用하고 있는 商標와 混同을 이르킬 憂慮가 있는 商標

(7) 出願人이 사용하기 以前부터 他人이 이미 使用하고 있거나 출원인인 登錄出願을 할 當時 그와 같이 使用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 商標와 混同을 이르킬 憂慮가 있는 商標

나. 商標登錄出願

商標登錄出願은 特許廳에 대하여 書面으로 해야하고 願書에는 出願人의 姓名 또는 名稱, 營業의 種類, 商標의 見本 및 登錄請求를 하고 있는 商品 또는 商品의 類別에 관해서 詳細하게 記載해야만 한다.

또한 國內에서 開催되는 國際博覽會에 出品한 商品에 처음으로 使用한 商標의 登錄出願으로서 그 博覽會의 開始後 6個月以內의 出願에 관계되는 것은 他人에 의하여 登錄出願되어 있거나 또는 使用되고 있는 商標와의 關係에 있어서는 그 商品이 當該博覽會에 出品한 날을 가지고 出願日로 看做한다.

한편 國王은 相互主義原則에 따라 똑같은 規定을 外國에서의 國際博覽會에 適用한다는 要旨의 協定을 外國과 締結하여 內國出願과 同一하게 待遇해 주고 있다.

그런데 商標出願이 이 法律의 規定 또는 이 法律에 基礎한 命令規定에 適合하지 않거나 또는 登錄要件이 具備되지 않을때 特許廳은 그 要旨를 出願人에 通知하게 된다.

이 때에는 出願人에 대하여 相當한 期間 意見書를 提出케 하거나 不備된 것을 補正하도록 許容한다.

出願時 商標見本은 반드시 提出하여야 하며 其他 願書에 不備한 點이 있는것은 特許廳이 定한 期間內에 提出하게 되면 商標見本을 제출한 날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한편 指定期間의 滿了前에 特許廳으로부터의 通知에 대하여 回答을 하지 않으면 當該出願은 取下한 것으로 看做하게 되고 다만 출원인인 所定の 料金を 納入하고 그 기간이 滿了되고서부터 4個月以內에 出願回復을 申

請하면 1회에 限하여 回答할 수 있는 機會를 賦與한다

그러나 出願人이 指定期間內에 特許廳의 通知에 대하여 回答을 했더라도 특허청에서 當該出願에 不備한 點이 있다고 認定하면 이를 却下한다.

이에 따라 登錄이 拒絕되었을 출원인은 所定の 料金を 내고 拒絕決定에 대하여 特許廳 第2部에 抗告할 수가 있고 抗告期間은 拒絕通知가 特許廳에서 送達한 날로부터 2個月로 한다.

계속하여 商標登錄이 第2部에서 拒絕되면 이 거절결정에 대하여 法院에 提訴할 수가 있다.

다. 出願公告 및 異議申請

出願이 이 法律 및 여기에 基礎한 命令規定에 適合하여 登錄에 瑕疵가 없을때는 願書 및 그 添付書類는 모두 公衆의 閱覽에 부치게 된다.

이 경우 出願은 特許廳에서 發行하는 公報에 出願의 要旨와 함께 公告하며 그 公告에 따라 異議申請을 할 수가 있다.

또한 公告에는 當該商標의 登錄에 대하여 異議를 提起하려는 者가 公告한 날로부터 2個月以內에 所定の 方法에 의해 그 申請을 하게 되면 그 申請의 要旨를 掲載하도록 되어 있다.

이 期間이 滿了되면 特許廳은 그 出願의 節次 및 審査를 續行하여 商標의 登錄與否를 決定하게 된다.

特許廳의 決定에 대하여 出願人 및 異議申請人이 不服할 때는 特許廳 第2部에 抗告할 수가 있다.

特許廳이 當該商標를 登錄하도록 最終적으로 決定했을때 그 商標는 特許廳에서 備置한 登錄原簿에 登錄되고 그 要旨가 특허청에서 發行하는 公報에 公告되면서 登錄證이 出願人에 發送된다.

그러나 출원이 公衆의 閱覽에 供하여져서 登錄이 拒絕되었거나 出願이 取下되었을 때는 그 要旨를 公告하도록 되어 있다.

라. 登錄有効期間 및 更新

商標가 特許廳에 出願한 날 또는 出願이 있었던 것으로 看做한 날로부터 登錄이 有効하며 登錄의 有効期間은 當該商標의 登錄에 관해 最終決定이 있는날(登錄日)로부터 10年이다.

商標權者가 登錄期間의 滿了日로부터 10年씩 繼續하여 更新登錄出願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은 登錄期間의 滿了前 1年以內에 또는 滿了後 6個月以內에 所定料金を 添付하여 書面으로 特許廳에 내면 된다.

更新登録出願이 登録期間의 滿了時까지 하지 않으면 特許廳은 商標權者나 그 代理人에게 그 要旨을 通知하나 이 通知가 없었다고 해서 特許廳이 어떠한 責任을 지지는 않는다.

마. 登録의 無効

商標가 法律의 規定에 違反하여 登録되었으면 法院의 判決로서 登録을 無効로 하게 되며 또한 商標權者가 營業活動을 中止했을 때 또는 登録에 관계되는 商標가 顯著性을 喪失했을 때, 그리고 그 商標가 公衆을 欺瞞하거나 公序良俗에 違反했을 때도 法院의 判決로서 그 登録을 無効로 하게 된다.

登録無効에 관한 裁判節次는 오슬로시의 法院이 管轄權을 가지며 法律上的 利害關係가 있는 者는 누구든지 裁判節次를 밟을 수가 있고 特許廳은 그 節次에 관한 通知를 法院으로부터 받게 된다.

한편 商標權者와 그 權利에 異議를 申請한者는 協議에 의해 登録의 有効性에 관한 문제를 特許廳 第2部에 最終的인 決定을 해주도록 申請할 수가 있다. 이에 대해 特許廳 第2部는 當該保護條件이 明瞭하게 存在치 않았거나 現在에도 存在하지 않는다고 認定할 때도 商標權者가 不服申請이 없는限 그 登録을 最終的으로 無効로 한다는 것을 決定하게 된다.

바. 外國人登録

노르웨이에서 事業을 하고 있지 않는 外國人이 商標 登録出願을 할 때는 當該出願에 관계되는 商品에 붙은 그 者의 本國에서 商標登録이 되어 있는 要旨을 證明해야 한다.

그러나 當該出願의 本國과 노르웨이와의 商標 登録出願에 관한 相互主義原則이 이루어지면(相互保護協定이 되어 있을 때) 그 證明을 免除할 수가 있다.

相互主義原則에 따라 國王은 外國에서 合法的으로 商標 登録出願을 한 者는 누구든지 一定期間內에 노르웨이에 출원할 수가 있고 그 출원은 外國에서의 出願과 同時에 노르웨이에 出願한 것으로 看做하는 命을 하게 된다.

外國人出願에 있어 國內에 住所를 갖고 있지 않는 者는 國內에 住所를 가졌거나 特許廳에 届出한 代理人에 限하여 登録出願이나 更新出願을 할 수가 있다. 代理人은 登録에서 發生되는 權利行使와 商標에 관한 모든

事項에 대하여 本人을 代理하여 民事事件에 까지 代理하고 姓名 및 住所는 商標 登録原簿에까지 登録하게 된다.

사. 讓渡 및 實施許諾

商標權은 商標가 사용되고 있는 營業과 함께 또는 營業과 分離하여 讓渡할 수가 있다.

營業을 讓渡할 때는 그 營業에 관계가 있는 商標權이 別段의 契約이 없는限 營業의 讓受人에게 歸屬되고 所定の 料金支拂로서 商標 登録原簿에 登録된 다음 公衆에게 公告한다.

그러나 商標權의 讓受人에 의해 當該商標의 使用이 公衆을 欺瞞할 憂慮가 있다고 看做되면 特許廳은 讓渡의 登録을 拒絕할 수가 있고 拒絕에 대한 抗告節次는 登録出願時와 同一하다.

한편 商標權者가 他人에 대하여 營業上 그 商標를 사용토록 許諾(使用權)한 경우에 雙方이 所定料金を 내고 申請을 하게 되면 이 使用許諾의 事實에 關係서 商標 登録原簿에 登録하여 公告하게 되며 使用許諾이 終了된 것이 뒤에 確認되면 똑같은 方法으로 登録 및 公告한다.

그러나 使用許諾을 받은 者가 當該商標를 사용함에 있어 公衆을 欺瞞할 憂慮가 있다고 인정되면 特許廳은 使用許諾의 登録을 拒絕하게 된다.

아. 商標權保護

노르웨이 商標法에서 規定한 것을 違反하여 商標를 사용한 者는 罰金 또는 3個月 以下の 禁錮에 處하되 檢察官의 告訴나 被害者의 親告로서만 可能하다.

故意 또는 過失로서 法律의 規定에 위반하여 商標를 사용한 者는 被害者에 대해 損害賠償의 責任을 갖게 되며 善意로 했을 때 法院은 相當히 認定되는 程度만큼 그 사용자에 損害賠償을 命하게 되고 그 損害額은 當該侵害에 의해 얻어졌다고 認定되는 利益을 超過할 수는 없다.

商標權에 관한 侵害事件에 있어 法院은 當該商標의 濫用을 防止하기 위해 有罪判決로서 沒收한 物品을 被害者에게 引渡하고 被害補償要求額에서 差引控除하게 된다. 그리고 實施許諾을 받은 者가 侵害의 訴를 提起할 때는 當該商標權者에 그 訴에 關係서 通知하도록 되어 있다.